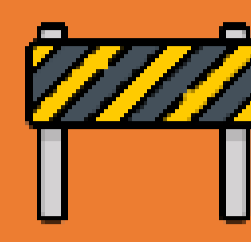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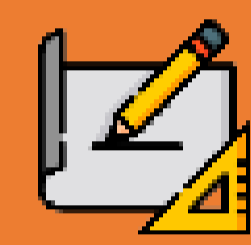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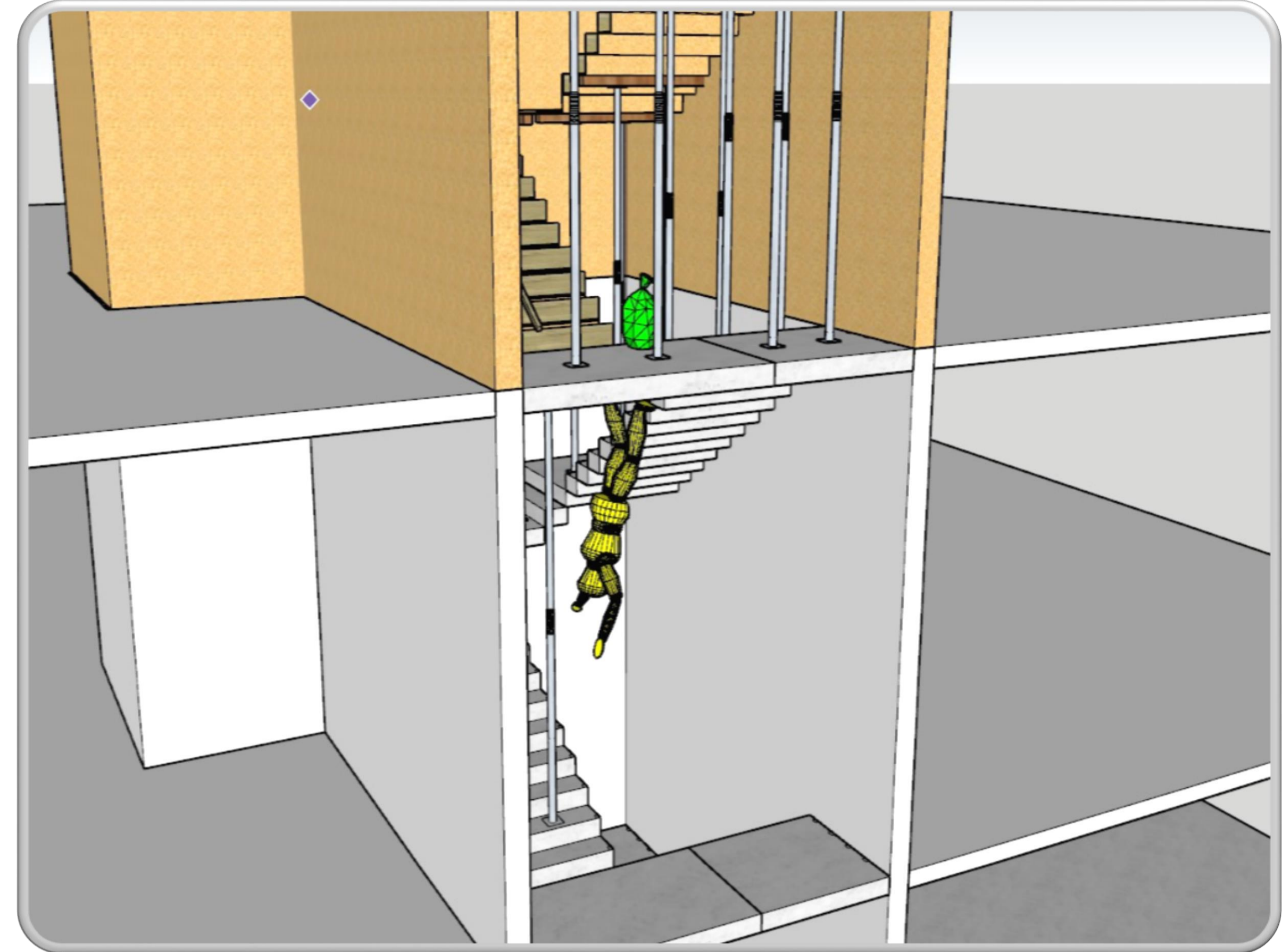


계단실 내부에서 이동 중 추락



재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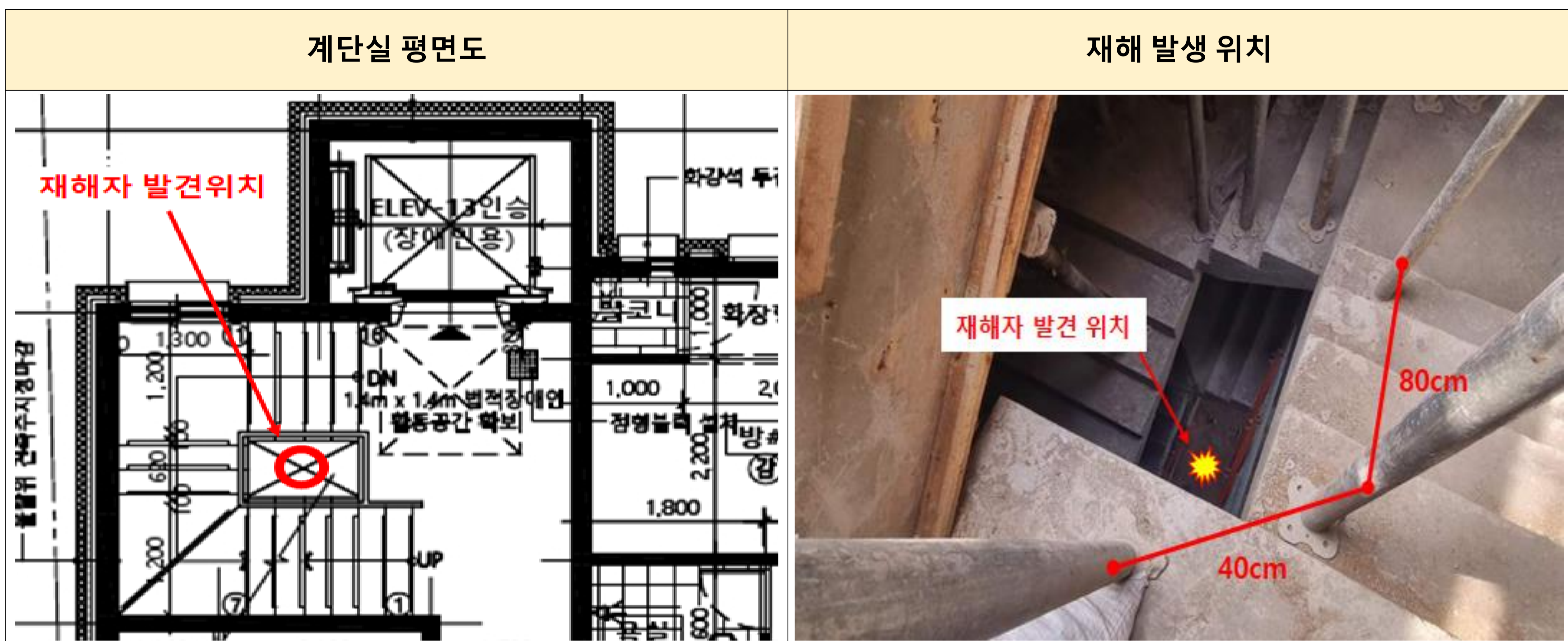
2023.05.00.(화) 16:00경 평택시 소재
 000건설 00지구 다가구 신축 현장에서
 재해자가 계단실을 통해 지상 4층에서
 아래로 이동하던 중, 지상 3층 계단 측면으로
 추락(높이 약 6.5 m)하여 사망함



발생원인

▶ 이동통로 추락방호조치 미 실시

- (추락방호조치 미 실시) 계단실 내부 작업자 이동통로 인근의 개방된 측면 또는 계단참 단부 등에 대한 추락방호조치 미 실시



예방대책

1 계단 측면 추락방호조치 실시

- 높이 1m 이상의 계단 측면 또는 계단참 단부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*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 실시
- * 안전난간은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 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,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 cm이상의 지점에, 하부 난간대는 바닥면과 상부 난간대의 중간높이에 설치할 것

※ 본 M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